

## 본 협회, 공정위와 공동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7월 14일(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한양대 조병량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매일경제 신문 강응선 논설위원, 시민의 모임 김재욱 사무총장, 한국광고업협회 민병호 부회장, 한국광고주협회 박효신 이사, KDI 신광식 연구위원, 서울 YMCA 신종원 부장, 서울대 여정성 교수,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 서강대 최창섭 언론대학원장 등 표시·광고와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공정위 김용 사무처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지정토론참가자의 지정토론과



일반청중의 자유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동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론내용

- 대부분의 토론자는 표시·광고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
  - 특히 중요표시·광고사항의 공개, 광고실증, 임시중지명령, 자율규제 등은 부당표시·광고억제, 소비자권익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
  - 다만, 전속고발제는 소비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하고 임시중지명령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도출
- 광고업협회는 기존의 사전규제적인 개별법을 통합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현행법을 보완·강화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므로 법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법제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의 권익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이나 예단적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조건부 입장을 제시

#### (1) 중요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 참석자 모두 소비자정보제공, 경쟁촉진 차원에서 동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주장

- 다만, 공정위가 고시제정시 관련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당사자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수정함이 바람직(신종원, 강응선)

(2) 광고실증제

- 광고실증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으나, 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제시
  - 소비자단체에게도 실증자료청구권을 부여해야 함(김재욱, 신종원, 강응선)
  -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표현은 포괄적·자의적이므로 실증자료 제출 경우를 계수·계량 또는 화학적 분석결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민병호)
  -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미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함(김재욱)

(3) 광고대행사의 책임

- 대부분의 참석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한 책임부과는 부당광고 억제에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주장
  - 신문 등 매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자는 일부의견도 제시(최창섭, 여정성)

(4) 감시중지제

- 광고주협회를 제외하고는 임시중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며, 일부 수정의견 제시
  - 소비자, 소비자단체에게도 임시중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임시중지청구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신광식)
- 광고주협회는 임시중지는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5) 전속고발제

- 대부분의 참석자가 공정위의 전문적인 심사필요성, 기업활동의 위축우려 등을 감안 전속고발제 유지에 찬성
  - 부당한 신문·방송보도에 대한 제재시 먼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같은 취지(최창섭)
- 일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소지가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김재욱,

신종원, 강응선)

- 부당표시·광고는 그 성격상 형사별로 제재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벌칙규정을 삭제하면서 전속고발제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신광식)

(6) 과징금

- 일부 참석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내”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김재욱, 강응선)
- 반면 광고업협회, 광고주협회는 광고관련 매출액 기준 또는 총광고비의 일정비율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7)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

- 지방자치단체에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자치단체의 전문성·운영실태 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신광식, 최창섭)

(8) 손해배상청구

- 공정위 시정조치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삭제(신종원)
- 민사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김재욱)
- 무과실 책임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濫訴방지를 위하여 명백한 위법인 경우(예·법위반사실의 공표조치를 하는 사건)에만 손해배상을 지도록 수정(강응선)

(9) 기타

- 표시·광고자문위 구성에 광고업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박효신)
-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등의 표현은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있으므로 “우려”라는 표현보다 “소비자가 오인된 경우”로 한정(민병호)
- 표시와 광고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다룰 필요(박효신)
-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여정성)